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878

발의연월일: 2024. 7. 17.

발 의 자:서삼석·문대림·임호선

이병진 · 박희승 · 복기왕

소병훈 · 김영진 · 정준호

정을호 • 이개호 • 윤준병

문금주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2021년 전라남도 순천시와 신안군 등을 포함한 총 5개 지역의 4개 갯벌(보성·순천갯벌, 신안갯벌, 서천갯벌, 고창갯벌)이 유네스코의 세 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정부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의 갯벌 (이하 "갯벌세계유산"이라 함)을 통합적으로 보전·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2026년까지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원(이하 "보전원"이라 함)을 신안군에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.

그런데 갯벌세계유산은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하여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음에도, 현행법은 갯벌세계유산을 점검·관리할수 있는 근거와 보전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갯벌세계유산의 보호·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보전원의 안정적인

운영을 위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갯벌세계유산에 대해 조사하고 점검·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전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갯벌세계유산을 통합적 ·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그 가치 보전에 기여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갯벌에 대해 "갯벌세계유산"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(안 제2조제9호 신설).
- 나.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보전원의 사업내용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(안 제30조의2 신설).
- 다.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갯벌세계유산의 보전 등에 대해 조사 및 점검·평가 등을 하도록 규정함(안 제30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"갯벌세계유산"이란 「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」 제1조, 제2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 화기구의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국내의 갯벌을 말한다.

제7조제3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갯벌세계유산의 현황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장의2(제30조의2 및 제30조의3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장의2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원 등

제30조의2(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의 설립) ① 갯벌세계유산의 통합적 보전·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원(이하 "보전원"이라 한다)을 둔다.

- ② 보전원은 법인으로 한다.
- ③ 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다.
- 1. 갯벌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등에 대한 조사 · 연구
- 2. 「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시행 계획 및 사업계획의 이행
- 3. 갯벌세계유산 관련 국제 교류협력 촉진 및 네트워크 구축
- 4. 갯벌세계유산과 관련된 교육, 홍보와 출판물의 제작·보급
- 5. 그 밖에 보전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- ④ 보전원은 보전원장(이하 "원장"이라 한다) 1명을 포함한 임원을 둘 수 있으며, 임원의 정수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- ⑤ 원장은 이사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.
- ⑥ 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 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소 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수 있다.
- ⑧ 지방자치단체는 보전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

사용・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-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전원을 지도·감독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다.
- ⑩ 보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30조의3(갯벌세계유산의 조사 및 점검·평가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조사하고 점검·평가하여야한다.
 - 1. 갯벌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보전에 관한 사항
 - 2. 「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시행 계획 및 사업계획의 이행
 - 3. 그 밖에 갯벌세계유산의 보전·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
 - ② 해양수산부장관과 관할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갯벌세계유산의 보전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.
 -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「습지보전법」 제13조제5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그 승인에 따른 행위가 갯벌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심의를 거칠 수 있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점검·평가 방법,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36조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6의2. 「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의 시행계획 및 제14조의 사업계획에 따른 갯벌세계유산의 보존·관 리 및 활용사업
 - 6의3. 제30조의3에 따른 갯벌세계유산의 조사 및 점검·평가 업무 6의4. 갯벌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술조사·연구 ·기술개발 및 국내외 교류 활동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2조, 제3조 및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보전원의 설립준비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전원의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원 설립준비위원회(이하 "준비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한다.
 - ② 준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해양수산 부차관이 된다.
 - ③ 준비위원회는 보전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이 법 시행 전까지 보전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

- ④ 설립 당시의 보전원 원장은 제30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.
- ⑤ 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전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에는 제4항에 따라 임명된 보전원의 원장에게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고, 인계가 끝난 때에 준비위원회는 해산되고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.
- 제3조(보전원의 설립비용) 국가는 보전원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.
- 제4조(물품의 무상 양도)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가 관리 (보전원의 건립·운영에 한정한다)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에 대하여 「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보전원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한다.
- 제5조(권리 및 의무의 승계)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보전원은 준비위원회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보전원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(公簿)에 표시된 준비위원회의 명의는 보전원의 명의로 본다.
- 제6조(예산안 작성·제출에 관한 특례) 보전원 설립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보전원 예산서는 준비위원회가 작성·제출할 수있다.

- 제7조(예산 집행에 관한 경과조치) ① 보전원은 보전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종전 준비위원회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보전원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9. "갯벌세계유산"이란 「세계
	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
	에 관한 협약」 제1조, 제2조
	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제
	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세
	계유산목록에 등재된 국내의
	<u>갯벌을 말한다.</u>
제7조(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	제7조(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
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	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
• ② (생 략)	·② (현행과 같음)
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3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
1. ~ 13. (생 략)	1. ~ 13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14. 갯벌세계유산의 현황과 관
	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
14. (생략)	<u>15.</u> (현행 제14호와 같음)
④ ~ ⑦ (생 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5장의2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
	원 등
<u> <신 설></u>	제30조의2(갯벌세계자연유산 보
	전원의 설립) ① 갯벌세계유산

- 의 통합적 보전·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원(이하 "보전원"이라 한 다)을 둔다.
- ② 보전원은 법인으로 한다.
- ③ 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다.
- 1. 갯벌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

 적 가치 등에 대한 조사・연

 구
- 2. 「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시행계획 및 사업계획의 이행
- 3. 갯벌세계유산 관련 국제 교 류협력 촉진 및 네트워크 구 축
- 4. 갯벌세계유산과 관련된 교육, 홍보와 출판물의 제작· 보급
- 5. 그 밖에 보전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- ④ 보전원은 보전원장(이하"원장"이라 한다) 1명을 포함한임원을 둘 수 있으며, 임원의

정수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- ⑤ 원장은 이사회가 복수로 추 천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 부장관이 임명한다.
- ⑥ 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해 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 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지원할 수 있다.
- ⑧ 지방자치단체는 보전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 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을 무상으로 사용・수익하게 할 수 있다.
-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전원을 지도·감독하고,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다.
- ⑩ 보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

<신 설>

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.

- 제30조의3(갯벌세계유산의 조사 및 점검ㆍ평가 등) ① 해양수 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하여 매년 조사하고 점검 ㆍ평가하여야 한다.
 - 1. 갯벌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 적 가치 보전에 관한 사항
 - 2. 「세계유산의 보존・관리 및

 활용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

 시행계획 및 사업계획의 이행
 - 3. 그 밖에 갯벌세계유산의 보전 •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② 해양수산부장관과 관할 시·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갯벌세계유산의 보전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.
 -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 지사는 「습지보전법」 제13조 제5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그 승인에 따른 행위가 갯벌세 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

제36조(국고보조) 국가는 갯벌생 저 태계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 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대 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1. ~ 6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<신 설>

<신 설>

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에
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
<u>칠 수 있다.</u>
④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점검
•평가 방법, 절차 등에 관하여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
<u>한다.</u>
제36조(국고보조)
1. ~ 6. (현행과 같음)
6의2. 「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
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」 제1
3조의 시행계획 및 제14조의
사업계획에 따른 갯벌세계유
산의 보존・관리 및 활용사업
6의3. 제30조의3에 따른 갯벌세
계유산의 조사 및 점검ㆍ평가
6의4. 갯벌세계유산의 보존·관
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술조

	사・연구・기술개발 및 국내
	외 교류 활동
7. (생 략)	7. (현행과 같음)